



제9차 협약이행 전문위원회(이하 “III 9”)가 2023년 07월 31일부터 2023년 8월 4일까지 하이브리드 회의로 개최됨. 동 News Flash는 III 9의 주요 논의 결과를 브리핑함.

1. 우크라이나의 임시 점령 지역에서 발행된 기국 및 선급증서와 증명서 발급에 관련된 러시아의 무단 및 불법 관행에 관한 권장지침 (의제 2)

III 9는 러시아 연방이 일시적으로 점령한 우크라이나 지역의 특정 지역에서 러시아 연방 점령 당국이 자국 국기 아래 항해할 수 있는 권리 증명서와 선급 및 법정 증명서를 발급하는 것과 관련하여 반복되는 무단 및 불법 관행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권장지침을 논의함.

러시아 연방은 전면적인 우크라이나 침공을 개시(22.2.24.)했으며, 이는 유엔 총회(22.3.2.)에서 제11차 긴급 특별 회의의 결의안인 A/RES/ES-11/1에서 단호히 규탄한 바 있음.

러시아 연방 또는 타 국적 선박에 대한 검사를 수행하는 동안 기국 및 항만국에 해당 통제관이 해당 증명서가 소재한 기관에서 발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할 것을 권장함. 우크라이나의 임시 점령 지역에서 발행된 문서는 사기로 간주되며 항만국 통제 절차에 따라 억류 측면에서 선박에 대해 적절한 절차적 조치를 취해야 함

III 9 전문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위원회에 상정할 것을 결정함.

- 불법 점유된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발급된 선원 관련 문서들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제안과 관련하여 발언권을 행사한 대표단의 압도적인 다수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였음. 러시아의 국제해사법 위반을 지적하고 러시아의 무단침입 및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훼손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즉시 중단할 것을 규탄하며 대다수의 회원국들은 기국 및 항만국이 경우에 따라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며 MSC의 107차 결과를 반복하고 항만국 통제 절차에 따라 적절한 절차적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을 요청함.
- 회원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였으며, 위원회는 불법침공 여부는 IMO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므로 기국 및 회원국들이 STCW 협약의 기국 및 항만국으로써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관심있는 회원국들의 관심을 촉구하며 추가검토를 위해 관심있는 회원국들은 MSC 108에 제안할 것을 요청함.

2. PSC 활동과 절차의 조화로운 시행 (의제 5)

(PSC 활동, 사례 및 통계 분석) 문서 FSI 20/WP.5의 부록 3에 기재된 양식을 사용하여 모든 PSC 체제에게 연례 보고서를 지속적으로 전문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요청함. 특별히 기국 및 RO 평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하며, 기국이 높은 성과를 보이는 RO를 위임할 수 있도록 협조할 것임.

(Flag 및 RO Performance) PSC 규제 기관들에게 기국 및 특히 RO 평가에 관한 정보를 계속해서 제공할 것을 권장하며, 이를 통해 기국이 성과가 높은 RO를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함.

(PSC 정보의 투명성과 조화)

- **(Equasis 정보 시스템)** Equasis 대표에게 관련 업데이트를 제공하고 향후 회의에 참석할 것을 재차 요청함.
- **(규제 기반 항만국 통제 및 미래 발전 가능성)** III 9는 문서 III 9/5/5(사무국)를 고려하여, 당사국 정부가 항만국 통제를 행사하는 권리에 대한 역할과 책임, IMO의 지원 역할, 그리고 가능한 미래 발전 가능성에 관한 내용을 검토하였음. 전문위원회는 파리 MoU 위원회가 파리 MoU 사무국에게 IMO의 총괄적인 데이터베이스 개발 가능성과 관련하여 IMO와 연계하도록 요청한 내용, GISIS에 저장된 PSC 데이터를 분석하여 규제 및 정책 발전을 지원하는 추세를 확립하는 필요성, 그리고 어업 선박을 위한 항만국 통제 규정 개발 노력과 PSC MoU/협정이 증가하고 있는 사항 등에 대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았음

파나마 대표단은 총론에서는 미래 발전과 기회를 지지하지만 문서 III 9/5/5의 미래 발전 내용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함. 파나마 대표단은 2012년 케이프 타운 협약이 국제적으로 발효한 이후에 미래 발전을 지지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음.

전문위원회는 문서 III 9/5/5에서 제안된 미래 발전을 원칙적으로 동의하며, 파나마 대표단이 문서 III 9/5/5와 관련하여 언급한 조건을 고려함.

(PSC 지침 및 절차)

- **(선원유기에 관한 재정 보증)** LEG 110이 기국 및 항만국이 해사노동협약 (MLC), 2006 제 A2.5.2에 요구된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추가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고, 재정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였음을 안내받음. (LEG 110/18/1, 4(a).12.6항)
- **(단기 탄소 집약도 저감 조치)** MEPC 79에서 III 8의 결론을 인지하였으며, 그 당시 III 전문위원회 내에서 선박의 검사 시점에서 계획된 3년간의 시행 계획 또는 3년 연속으로 D 등급을 받은 선박 또는 E 등급을 받은 선박에 대한 수정 조치 계획을 구현하지 않은 경우를 출항정지 결함으로 고려할 지원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음. (MEPC 79/15, 7.65항 및 9.5항)
- **(통신작업반 보고서)** III 9는 III 8에서 전 세계 PSC 활동 및 절차를 조화시키는 조치에 관한 통신작업반을 유럽 연합 위원회의 조정하에 재설립하였으며, 통신작업반의 목표는 문서 III 8/19의 5.69항과 14.14항에 구체적으로 기재된 바와 같이, PSC 절차서 개정안을 계속 발전시키는 것이었음.

이와 관련하여, 전문위원회는 III 9/5 문서(유럽 연합 위원회)를 고려하였으며, 이 문서는 전 세계 PSC 활동 및 절차를 조화시키는 조치에 관한 통신작업반의 보고서를 포함하며, 그 일환으로 PSC 절차서 개정 작업을 제안하였음

캐나다 대표단은 전 세계 PSC 활동 및 절차를 조화시키는 조치에 관한 통신작업반의 보고서에 대

해 논평하며, MEPC가 BWM 협약과 관련된 경험 쌓기 단계에서 협약 검토 계획을 실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였음. 따라서 BWM 협약 하의 항만국 통제에 관한 지침 (결의 MEPC.252(67))은 가까운 미래에 다시 개정되어야 할 것임.

- **(위험성 평가와 관련된 규제에 대한 점검 원칙 수립 및 선박증서 사전 점검 도입)** 전문위원회는 III 9/5/3 문서(중국)를 검토하였으며, 선박 위험성 평가와 관련된 규정에 대한 점검 원칙 수립 및 선박증서 사전 점검 도입에 관한 항만국 통제 절차서, 2021 (결의 A.1155(32)) 개정안을 제안함.

이어지는 토론에서 전문위원회는 다양한 견해가 다음과 같이 표명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음

- IGF 코드는 선박이 위험 평가 보고서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요구하지 않았으므로 IGF 코드나 기타 의무적인 IMO 문서에 의해 위험 평가 보고서가 명확히 정의되고 요구된 후에 III 9/5/3 문서(중국)에 포함된 관련 제안을 고려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임
 - PSCO들은 선원의 휴식 방해하지 않고 실제 PSC 점검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탑승 전에 선박 증서와 문서의 점검을 요청할 것을 권장받을 수 있음
 - 제안된 지침은 PSCO들이 기국에서 승인한 위험성 평가를 사용하고, IGF 코드 4.2절의 위험 평가 방법론을 제안하며, SOLAS 제 II-1장 규정 55에 따른 절차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도록 권고 하였음. 그러나 SOLAS 제 II-1장 규정 55규칙에 따르면 동 위험성 평가는 기국의 위험성 승인 비대상임. 이는 엔지니어링 분석의 일부이고 기국이 위험성 평가를 승인한다는 의미가 아님
 - 선박을 점검할 계획을 세울 때, PSCO는 PSC 점검이 MLC 2006 및 STCW 협약의 근무 및 휴식 요구 사항 준수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여야 함. 적절한 경우 PSCO는 실제 PSC 점검 기간을 단축시키는 메커니즘을 고려하는 것이 권장됨
- **(총회 결의서 A.1155(32) 부록 개정안에 포함된 점검 중단에 관한 제안)** 전문위원회는 III 9/5/4 문서(브라질)를 검토하였으며, 총회 결의서 A.1155(32) 부록 개정안에 포함된 점검 중단에 관한 PSCO를 위한 지침서 초안의 개정안을 제안함

III 9/5/4 문서와 관련하여, 전문위원회는 다양한 견해가 다음과 같이 표현되었음을 주목하였음.

- 제안된 총회 결의서 A.1155(32) 부록 개정안의 3.6 텍스트에 관하여 한 대표단은 텍스트 1을 선호하는 이유로 더 나은 명확성을 제공하며, 이 문제가 작업 그룹에서 더 논의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음.
- 많은 대표단들은 점검 중단 문제가 이미 통신작업반에서 논의되었으며 통신작업반의 의견은 별도의 부록을 작성하는 대신 section 3에 개정안을 도입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함. 따라서 브라질의 제안을 작업반에서 검토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며, 작업반은 section 3의 개정안의 특정 측면을 확정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제안함.
- 한 대표단은 재점검 개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더 명확한 언어를 갖추고, PSC 활동 중 절차를 더 잘 실행하고자 하는 브라질의 제안을 지지하였음
- 이 문서는 PSC 활동을 조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점검 중단 절차에 대한 명확한 지침, 재점검을 위한 필요한 조치에 대한 통보 절차를 포함한 관련 절차를 명확하게 하며, 점검 중단 또는 불량 선박의 통일된 실행을 위한 보고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 **(고정식 이산화탄소 소화장치의 점검)** 전문위원회는 III 9/INF.21 (중국) 문서를 14번 의제에서 설립 될 전 세계 PSC 활동 및 절차를 조화시키는 조치에 관한 작업반이 추가적으로 검토할 것을 언급 하도록 합의하였음. 이 문서는 PSC 점검 데이터 분석 및 사례 연구를 통해 식별된 고정식 이산화 탄소 소화 시스템의 유지보수 및 점검 품질과 관련된 문제를 다룸

결론적으로, 전문위원회는 문서 III 9/5, III 9/5/3, III 9/5/4, III 9/10/1 및 III 9/INF.19를 전 세계 PSC 활동 및 절차를 조화시키는 조치에 관한 작업 그룹에 언급하고, agenda 14에서 설립되어 검토되도록 작업반에 언급 하였으며, 문서 III 8/5에 포함된 제안된 개정안을 고려하고, III 8 및 MEPC 79의 결과 (III 8/19, 5.55, 5.64 및 5.69.8항; MEPC 79/15, 7.65 및 9.5항)에 따라, 단기 탄소 강도 감소 조치에 관한 의결과 제안, 재무 안정성 에 관한 LEG 110 (LEG 110/18/1, 4(a).12.6항)에 따라 그리고 본회의에서 내린 결정 및 제안을 고려하여 작 업반에게 다음과 같이 지시하였음:

- III 8에서 표명된 견해를 고려하여 문서 III 8/5/3의 제안을 검토할 것. (III 9/5, 7.1항)
- 문서 III 8/5/3의 12항에 제안된 정의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조언을 하여, 앞으로의 방향을 결정할 것. (III 9/5, 7.2항)
- BWM 협약 관련 항만국 통제에 관한 지침 (결의 MEPC.252(67))을 검토하여 신규 부록으로 추가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III 9/5, 8항)
- 2022년 선박의 방오도료시스템(AFS) 검사에 관한 지침 (결의 MEPC.357(78))을 검토하여 신규 부 록으로 추가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III 9/5, 9항)
- 해상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통제 및 준수 조치에 관한 임시 지침 (결의 MSC.159(78))을 검토하여 새로운 부록으로 추가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III 9/5, 10항)
- 문서 III 9/5/3(중국)에 포함된 제안을 검토하여, 선박 위험성 평가와 관련된 규정에 대한 점검 원 칩을 수립하고 선박증서 사전 점검을 도입하는 것을 고려할 것.
- 문서 III 9/5/4(브라질)에 포함된 제안을 검토하여, III 8/5 문서에 부록 2를 재도입하지 않고 점검 중단에 관한 것을 고려할 것.
- III 9/5(유럽 연합 위원회) 및 III 8/5(유럽 연합 위원회) 문서에 포함된 제안된 항만국 통제 절차서 2021 (결의 A.1155(32)) 개정안을 우선적으로 확정하여, 작업반 검토 결과를 적절하게 고려하여 통 합된 형식으로 33차 총회에서의 채택을 목표로 제출할 것. 이 과정에서 문서 III 9/INF.19 (사무국) 및 작업반의 검토 결과를 적절하게 고려할 것.

[작업반 보고서]

항만국 통제 활동 및 절차를 조화시키기 위한 그룹(III 9/WP.4)의 보고서를 검토한 후, 전문위원회는 아래 항목을 반영하여 결정함

- 사무국과 의장의 협의를 통해 회의 후 그룹의 보고서와 그 안에서 요청된 조치를 기반으로, 이후 논의 중 전문위원회에서 내린 결정을 고려하여 준비될 예정이며 이번 회기에서 2021년 항만국 통 제 절차에 대한 총회 결의안 초안 작성을 완료하고 상정하여 전문위원회의 승인(A33에 상정하여 결의안 채택)을 요청하였으며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음.

- 1) (탄소 집약도 지표 등급 확인서 잠정 불요)
2024년 6월까지 CII 등급 확인서가 불요함을 명확히 함.
- 2) (탄소 집약도 지표 등급을 출항정지에서 잠정 제외)
CII 등급이 3년 연속 D 또는 E 등급 선박은 출항정지 결함으로 인정되어서는 안됨.
- 3) (평형수관리협약 결함 출항정지 반영 재논의)
BWM 협약 관련 절차는 MEPC의 작업이 완료된 이후 지침에 반영되도록 MEPC 통신작업반에 전달할 것을 전문위원회에 권고함.
- 4) (선박방오시스템 결함 출항정지 부록으로 추가)
AFS 협약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PSC 절차서에 새로운 부록으로 추가하기로 결정함.
- 5) (해상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통제 및 준수 조치에 대한 잠정조치)
MSC 105에서 잠정 지침을 검토하고 새로운 부록으로 신설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였고 향후 해상보안 관련 규정의 개정사항을 PSC 절차서에 반영하는 작업을 수행하도록 통신작업반의 업무에 포함할 것을 전문위원회에 권고함.
- 6) (재점검, 후속점검 지침 개발)
각 지역 PSC 업무절차 및 관행에 비추어 동 지침 개발은 시기상조라는데 합의하여 절차서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에 동의함.
- 7) (점검중단 지침 개발)
점검 중단과 관련한 "Text 1"과 "Text 2"를 검토후 "Text 2"를 유지하는 것에 합의함.
- 8) (위험성 평가 및 사전점검 절차)
각 지역 PSC 업무절차 및 관행을 고려하여 동 사항은 개정안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으로 합의함.
- 9) (고정식 이산화탄소 소화장치 유지보수 및 점검)
기존 IMO 규정이 존재하므로 동 사항은 더 이상 고려하지 않는 것에 합의함.

(향후 통신작업반 재설립 및 위임 초안)

Res.MSC.159(78) 검토, 출항정지 지침 일관성 확보를 위한 PSC 절차서 부록 검토, 중국 제안(9/5/3) 선원의 휴게시간 확보 개정안 검토하여 III 10에 보고할 것.

(향후 작업반 구성)

업무량을 고려하여 초안작업반(DG)가 아닌 작업반(WG) 설립을 권고하기로 합의함.

(III 9 전문위원회에 요청된 승인 및 조치사항)

- 1) 항만국통제절차서(이하 "절차서") 개정을 위한 편집작업을 사무국에 요청
- 2) MEPC에서 결정하는 평형수관리협약 개정사항이 완료된 후 절차서 개정을 시작하라는 작업반 권고사항에 동의
- 3) 평형수관리협약 이행과 관련하여 항만국통제점검관(PSCO)가 점검시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MEPC 통신작업반에 전달하도록 각 회원국에 촉구
- 4) Anti-Fouling System 2022 개정 지침 Res.MEPC.357(78))을 PSC 절차서의 신규 부록에 추가하라는 권고에 동의
- 5) 해상보안 강화를 위하여 동 규정을 PSC 절차서에 검토 및 반영하라는 권고에 동의
- 6) 해상보안 전문가가 참여하여 통신작업반을 지원하도록 각 회원국 및 전문기관이 참여하도록 요청하도록 동의

- 7) '재점검' 및 '후속점검'에 대한 정의를 절차서에 명문화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작업반의 권고에 동의
- 8) '점검중단'에 대한 작업반의 권고에 동의 (III 9/5 Text 1과 Text 2 제안중 수정된 Text 2 채택)

ANNEX
PROPOSED AMENDMENTS TO THE PROCEDURES FOR
PORT STATE CONTROL, 2021
RESOLUTION A.1155(32)

CHAPTER 3 – CONTRAVENTION AND DETENTION

3.6 SUSPENSION OF INSPECTION

(이하 수정전 III 9/5 Text 2 원문)

- 3.6.1 보다 상세한 검사 결과, 선원 상태를 고려한 선박 및 장비의 전반적인 상태가 명백히 표준 이하인 것으로 판명되는 예외적인 경우, PSCO는 점검을 중단할 수 있음.
 - 3.6.2 PSCO는 점검을 중단하기 전에 부록 2에 명시된 영역에서 발견 가능한 결함을 적절히 기록하여 선박에 출항정지를 부과하여야 함. PSCO는 부록 13에 명시된 대로 점검 보고서를 발행해야 함. 보고서에는 점검이 중단되었다는 사실과 점검 중단 사유가 자유 로운 문구(free text)로 명시되어야 함. 운영/안전상의 이유(예: 야간)로 점검을 중단하고 나중에 점검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점검 중단을 사용해서는 안 됨.
 - 3.6.3 책임 당사자가 선박이 관련 기기의 요구사항을 완전히 준수하는지 확인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근거로 PSCO에 재점검을 요청할 때까지 점검 중단이 계속될 수 있음. 따라서 책임 당사자가 취해야 할 조치는 점검이 중단되기 전에 양식 B에 기록된 결함만을 시정하는 것으로 명시적으로 제한되지 않음.
 - 3.6.4 선박이 출항정지되어 점검이 중단된 경우, 항만당국은 지체 없이 책임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함. 통지에는 출항정지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며, 해당 당국이 선박이 모든 관련 요건을 준수한다는 통보를 받을 때까지 점검이 중단됨을 명시해야 함.
- 9) 중국이 제안한(9/5/3) 선원의 휴게시간 확보 관련 규정 개정안 검토를 통신작업반에 지시
 - 10) 중국이 제안한 서면으로 사전점검을 시행하는 절차는 도입하지 않기로 결정한 작업반의 권고에 동의
 - 11) 고정식 이산화탄소 소화장치(INF.21)로 제기한 문제를 더 이상 고려하지 않기로 결정한 작업반의 권고에 동의
 - 12) PSC 절차서 개정의 후속작업을 위한 통신작업반이 재설립되어야 한다는 작업반의 권고에 동의
 - 13) 통신작업반이 재구성되는 경우 III 10 첫날 아침에 작업이 시작되어야 함
 - 14) 초안작업반(DG)가 아닌 작업반이 설립되어야 한다는 작업반의 권고에 동의

3. PSC 표준 교육훈련 과정 (의제 6)

III 9는 항만국 통제 모델 과정 3.09 개정을 위한 과정 개발자 및 검토 그룹의 초안 역할 설명서를 승인했으며, III 10에서 초안 개정 모델 과정의 승인을 목표로 함.

검증을 위해 III 10에 제출할 Model Course 3.09 초안 기간	
마감일	조치 사항
2024/01/15	개발자 초안 작성
2024/02/02	IMO 사무국의 변경 제안
2024/02/16	개발자는 IMO 사무국의 변경 제안이 포함된 수정된 초안 작성. IMO 사무국은 두 번째 초안을 검토 그룹에 전달
2024/03/15	검토 그룹이 개발자에게 추가 의견 및 지침을 전달
2024/04/05	개발자는 최종 개정안을 IMO 사무국에 제출 및 최종 의견을 검토 그룹에 전달
2024/04/19	검토 그룹 코디네이터가 MSC-MEPC.2/Circ.15/Rev.2의 부록 6에 포함된 평가 질문지를 포함하여 IMO 사무국에 보고서를 제출

전문위원회는 항만국 통제 모델 과정 3.09 개정을 위해 회의 간 통신을 통해 작업할 검토 그룹을 설립하였으며, 관심 있는 대표단을 과정 개발자, 코디네이터 및 검토 그룹 구성원으로 개정작업에 참여하도록 요청함.

- 검토 그룹 설립 이후, 전문위원회는 III 8에서 회원국 및 국제 기구에게 IMO 항만국 통제 모델 과정 3.09을 개정하는 개발자로 참여하거나 항만국 통제 모델 과정 3.09의 검토 그룹 구성원/코디네이터로 참여할 의사를 표시하도록 초청했음을 상기하였음. 이 맥락에서 중국 대표단은 항만국 통제 모델 과정 3.09 개정 및 업데이트를 개발자로 진행할 의사를 표명하였으며, 호주와 뉴질랜드 대표단은 자발적으로 항만국 통제 모델 과정 3.09의 개발 또는 검토 작업에 협조할 의사를 표명.
- 중국 대표단은 과정 개발자 역할을 맡을 의사를 재확인하였으며, 호주 대표단은 검토 그룹의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고자 하는 의사를 확인하였음. 뉴질랜드와 마셜 제도 대표단은 검토 그룹 구성원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의사를 표명함.
- 이어서, 전문위원회는 중국의 개발자로서의 제안과 호주의 검토 그룹 코디네이터로서의 제안을 수락하였음. 더 나아가, 전문위원회는 회원국 및 국제 기구들에게 항만국 통제 모델 과정 3.09의 검토 그룹 구성원으로 참여하고자 할 의사를 표시하도록 초청하였으며, 이는 회의 종료 후 1.5개월 이내로 III@imo.org 이메일 주소를 통해 사무국에 연락하여야 함.

4. IMO 규정 이행과 관련하여 PSC 정보 분석을 통해 식별된 문제 (의제 7)

'IMO의 정책 개발 및 의사 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개선된 데이터 분석을 위한 IT 활성화 프로그램 설립'이라는 프로젝트가 2023년에 사무총장에 의해 시작되었으며, 다음과 같이 글로벌 통합 배송 정보

시스템(GISIS)의 여섯 모듈을 다루고 있음에 대한 자문이 III 9 전문위원회로 제공되었음.

- 해양사고 및 사건(MCI 2)
- 항만국 통제(PSC)
- 회원국 감사(MSA)
- 연료 소비 데이터베이스
- 항만 수용 시설(PRFs)
- 세계 해양 비상 및 안전 시스템(GMDSS)

프로젝트의 초기 초점은 해양 사고 및 사건(MCI 2) 모듈에 놓였으며, 이후 조직의 다른 GISIS 모듈 및 관심 영역으로 범위가 점차 확장될 수 있음.

제출된 문서 및 분석을 바탕으로 IMO 기구의 규제 업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한 후, III 9 전문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함

- 해양사고 조사보고서 분석 작업 그룹에게 관련 분석 자료를 기타 IMO 기구로 전달하는 것을 고려하도록 지시하였으며, 이는 가능한 한 IMO 다양한 기구의 기존 규제 업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며, IMO 내에서 데이터 기반 의사 결정과 정책 개발을 지원하는 메커니즘 일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 회원국, 국제 기구 및 사무국에게 이 의제 아래 다양한 데이터 세트의 분석 자료 및 IMO의 규제 업무 및 정책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분석 효과적 활용 방안에 관한 제안을 계속해서 제출할 것을 요청함.
- 의미 있는 분석의 기초로서 데이터의 완전성과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해 회원국에게 관련 GISIS 모듈내 보고 수준을 격상시킬 것을 촉구함.

5. HSSC에 따른 최신 검사지침 및 III Code 관련 규정의 의무사항에 대한 개략적인 목록 (의제 10 및 11)

III 9는 HSSC에 따른 검사지침 및 의무사항목록에 대한 회기간실무작업반의 결과보고서를 검토하고, HSSC에 따른 검사지침에 대한 개정 초안을 최종화 함. HSSC 검사지침의 개정 초안에서는 선박 에너지 효율 관리 계획서(SEEMP) 업데이트 확인, 운항적 탄소집약도 등급 관련 확인증(Confirmation of compliance, COC) 관련한 검사항목이 포함됨.

III 9는 MSC.1/Circ.1362/Rev.2(SOLAS II-1에 대한 통일해석)을 고려하여, SOLAS II-1/3-8규칙(예인 및 계류 설비에 관한 규칙)과 관련된 검사항목 중 검사 시 문서의 제공여부만 확인하면 된다는 통일해석을 참조하여 검사지침의 개정안을 차기 회기간실무작업반에서 검토한 후 개발하기로 권고함.

이 의제 항목에서 III 9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함.

- III 9는 주석에 참조된 협약이 관련 의무협약에 인용되어 있다면, 주석을 중복하여 추가해서는

안된다는 것에 동의함. 차기 회기간실무작업반에서 HSSC에 따른 검사지침에 포함된 주석을 검토하기로 함.

- III 9는 만재흘수선 증서 이외의 협약증서에 해당하는 재화중량톤수는 해당 협약에서 명시된 대로 따라야한다고 동의함.
- III 9는 III 9/10/4에 설명된 상황에 대해서 선저외판검사는 검사지침에 이미 기술된 사항이라는 것에 동의함.

6. 원격검사, ISM Code 심사 및 ISPS Code 인증의 평가 및 적용을 위한 지침(의제 12)

III 9는 HSSC에 따른 검사지침 (Res.A.1156(32))과 주관청에 의한 ISM Code의 이행에 관한 지침 (Res.A.1118(30)) 개정안을 검토함. 여러 회원국들은 팬데믹 기간동안 얻은 경험과 기술의 발전을 고려하여 적용범위에 대한 신중한 접근방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함.

"불가항력"이라는 용어에 대해 논의가 있었으며, 일부 회원국들은 국제적인 정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가 법에는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이 용어를 포함하는 것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다른 일부는 원격검사를 실시하기 위해 이 용어가 필요하다고 판단함. 타협의 결과로, "불가항력"이라는 용어를 개정안에서 제거하기로 결정하고, 현장검사를 수행할 수 없게 하는 "특별한 상황"의 예시로 대체하기로 함.

III 9는 원격검사와 원격심사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여 HSSC 지침서 (Res.A.1156(32)) 및 주관청에 의한 ISM Code 이행에 대한 지침서 (Res.A.1118(30))에 대한 개정안을 최종화 하였으며, 작업반에서 원격 검사 및 심사의 범위, "불가항력"과 "법적 요구사항"과 같은 용어, 선원들의 보호, 그리고 현장검사 및 심사에 관련된 인력의 교육에 중점을 두고 논의함.

원격검사 및 ISM Code 와 ISPS Code 인증에 대한 지침의 추가 개발은 차기 회기간실무작업반에게 위임되었으며, III 10에서 완료될 것으로 예상됨.

(***)

검사업무팀장

담당자: 나훈 수석검사원

Tel: +82 70 8799 8213

Fax: +82 70 8799 8219

E-mail: psc@krs.co.kr

Disclaimer

Although all possible efforts have been made to ensure correctness and completeness of the contents contained in this information service, the Korean Register is not responsible for any errors or omissions made herein, nor held liable for any actions taken by any party as a result of information retrieved from this information service